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정일	2011. 3. 1
개정일	2022. 4. 1
개정차수	10차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1조, 고등교육법 제11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학칙 제45조의 2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

제 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1. 1)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처장, 학생처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교직원 중 약간 명, 학생대표 3명, 동문 1명, 관련 전문가 2명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미만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1. 11. 1, 2014. 1. 1, 2014.11. 1, 2021. 3. 1)

④ 학생위원은 학생자치기구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8. 1. 1)

⑤ 외부 관련 전문가 위원은 교육 및 경영에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자로서 본 대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대학을 대표하는 기획처와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가 협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8. 1. 1, 개정 2021. 3. 1)

⑥ 동문위원은 본 대학 동문회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8. 1. 1)

⑦ 위원회 위원 중 교직원 위원은 대학평의원회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18. 1. 1, 개정 2018. 5. 1)

제 3조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학생위원의 경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8. 1. 1)

제 4조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1)

②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1)

③ 기타 등록금 책정 및 예산 및 결산에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 7. 1)

제 5조 (회의) ①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개최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통보하고 회의자료는 회의 개최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송부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회의 일시, 장소, 안건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18. 4. 1, 2022. 4. 1)

② 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며, 회의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한다.

[전문개정 2018. 1. 1]

제 6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